

제 7 장 신용장

1)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信用狀)이란,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제시되면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에서 정한 금액을 수익자 앞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지급확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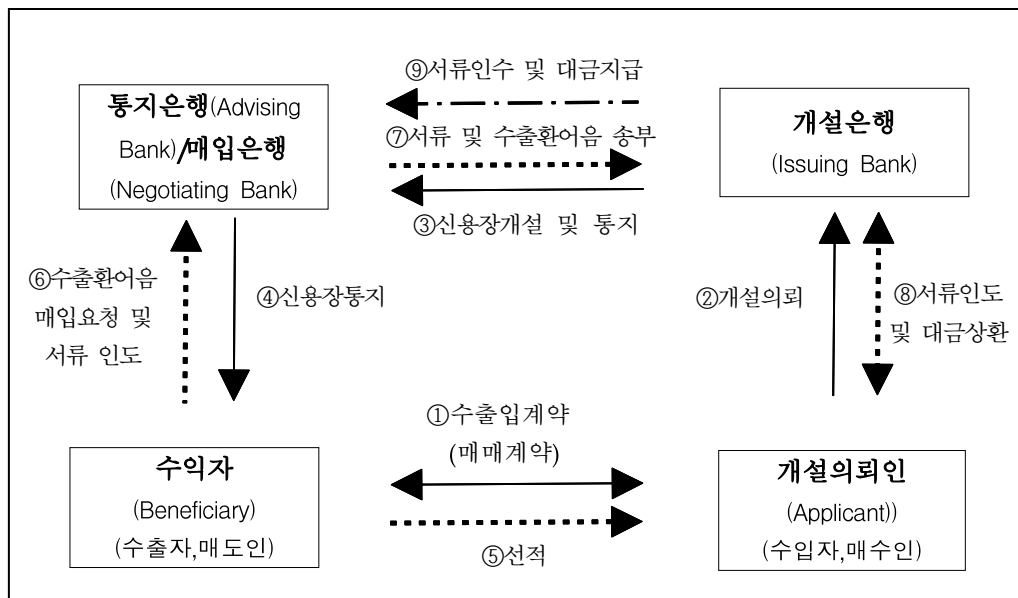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의 신청과 지시에 의해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며, 신용장은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이러한 내용을 충족시키면 신용장으로 인정된다.

(신용장통일규칙 상 신용장의 정의)

- '신용장(Credit)은 그 명칭과 상관없이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UCP 600 제2조)
- '**Credit** means any arrangement, however named or described, that is irrevocable and thereby constitutes a definite undertaking of the issuing bank to honour a complying presentation.'

2) 신용장의 거래구조

신용장거래 도해



신용장의 거래구조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수출자와 수입자간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정한다.

- 2) 개설의뢰인은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한다.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한도 내에서 신용장을 개설한다. 신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를 요구한다.
- 3) 개설은행은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여 신용장을 개설한다. 신용장의 내용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개설은행은 수출국에 소재하는 통지은행(advising bank)을 통해 수익자 앞 신용장개설을 통지한다.
- 4) 수출자는 상업송장을 작성하고, 물품을 선적하여 운송인으로부터 운송서류를 받는다. 운송인으로부터 받은 선하증권은 운송계약인 동시에 물품의 수령증이 된다.
- 5) 수출자는 상업송장, 운송서류 등 신용장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송부한다. 통상 직접 송부하지 않고, 자신의 거래은행에 수출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도(negotiation)하고, 이를 매입한 매입은행(negotiating bank)이 개설은행앞으로 수출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한다.
- 6) 개설은행은 서류가 도착하면 개설의뢰인에게 서류의 인수여부를 문의한다. 개설의뢰인이 인수의사를 표시하면, 매입은행앞으로 서류인수통보(Acceptance Advice : A/A)를 한다. 개설의뢰인이 인수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선적서류를 면밀히 심사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매입은행앞으로 인수거절통지를 한다. 만약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개설은행은 인수통보를 해야 한다.

3) 신용장 관련 당사자 (UCP 600 규정)

☞ UCP :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신용장통일규칙)

☐ 수익자(beneficiary)

Beneficiary means the party in whose favour a credit is issued.

(수익자는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 개설의뢰인(applicant)

Applicant means the party on whose request the credit is issued.

(개설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 개설은행(issuing bank)

Issuing bank means the bank that issues a credit at the request of an applicant or on its own behalf.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신청 또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을 의미한다.)

☐ 통지은행(advising bank)

Advis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vises the credit at the request of the issuing bank.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통지하는 은행을 의미한다.)

□ 지정은행(nominated bank)

Nominated bank means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or any bank in the case of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지정은행은 신용장에서 권한을 받은 특정한 은행을 의미하고, 모든 은행에 대한 수권이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모든 은행을 의미한다.)

□ 확인은행(confirming bank)

Confirming bank means the bank that adds its confirmation to a credit upon the issuing bank's authorization or request.

(확인은행은 개설은행의 수권 또는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에 확인을 한 은행을 의미한다.)

□ 제시자(presenter)

Presenter means a beneficiary, bank or other party that makes a presentation.

(제시자는 제시를 하는 수익자, 은행 또는 다른 당사자를 의미한다.)

4) 신용장의 기능

(1) 수익자(매도인)의 입장

신용장을 통해 매도인(수출자)은 매수인(수입자)의 대금지급거절 또는 대금지급불능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비록 매수인이 지급거절의사를 표시하거나 개설은행에 지급거절 요청을 하여도 개설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책임이 있다. 따라서 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사실상 매수인의 신용도(buyer's credit)는 개설은행의 신용도(bank's credit)로 대체된다.

그리고 매도인은 선적 후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은행에 매도(negotiation)하고 매입은행으로부터 미리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장이 없는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위험이 높기 때문에 매입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의 매입을 기피하지만, 신용장거래의 경우 매입은행이 매입대전을 지급하기 전에 서류를 심사할 수 있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한다. 또한, 매도인은 포페이팅을 이용하여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포페이터에게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도 있다.

(2) 개설의뢰인(매수인)의 입장

신용장은 매도인에게 대금미회수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매도인은 신용장이 있는 거래를 선호한다. 그 대신 매수인은 신용장개설 수수료, 담보제공 등 신용장개설에 따르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수인은 신용장제공의 대가로 가격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신용장없이 연지급거래(즉 외상거래)가 어려운 매수인도 신용장제공에 의해 연지급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연지급거래의 경우 매수인은 물품수령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개설은행에 신용장대금을 상환하고, 개설은행은 그 상환대금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수 있어, 매수인이나 개설은행의 자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개설은행의 입장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이 양호한 경우에는 별도의 담보 없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이 양호하지 않거나 신용한도에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받고 신용장을 개설한다. 개설은행은 신용장발행 수수료를 받게 되므로 신용장개설은 개설은행의 주요한 수입원이 된다. 또한, 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 및 신용장대금 지급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서 평판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이상과 같이 신용장은 관련 당사자에게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국제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을 악용한 신용장사기(fraud)는 신용장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수출입자별 장단점)

구 분	장점	단점
수출자	○ 대금지급 보장 ○ 수입자의 클레임 방지	○ 서류하자 시 대금미지급 ○ 가격 할인
수입자	○ 가격 할인 ○ 외상가능	○ 수수료 발생 ○ 물품하자 시에도 개설은행앞 대금상환

5)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성

☐ 신용장의 독립성(the principle of the independence)

신용장은 기본거래인 매매계약이나 기타 거래와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기본계약불이행(즉 수출계약불이행)을 사유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은 서류로 거래하는 것이며, 물품이나 용역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신용장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서류만 요구한다.

* 매매계약에서는 지급조건으로 물품이나 용역의 제공을 요구한다.

6) 신용장 핵심정리

① 신용장은 SWIFT라는 은행간 전신망을 통해 개설되어, 그 형식과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다.

② 신용장 관련 용어 숙지

- Issuing Bank(개설은행), Beneficiary(수익자, Seller), Applicant(개설의뢰인, Buyer), Advising Bank(통지은행, 수출국 소재), Nominated Bank(지정은행, 이하에서 보충설명), Confirming Bank(확인은행)

* 통상 통지은행이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③ 신용장에서 숙지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i) 45A : Documents Required (요구되는 서류)

- 신용장은 서류상의 거래이며, Seller가 수출을 이행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류("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시하며,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 위 선적서류는 신용장내용과 엄격하게 일치해야 하며, 신용장에서는 요구되는 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B/L,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Inspection Certificate (검사증명서), Draft(환어음))
- 기타 CIF조건의 경우 Insurance Policy(보험증권)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서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 증명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1) FULL SET OF CLEAN ON BOARD OCEAN BILLS OF LADING MADE OUT TO THE ORDER OF BANK OF CHINA, MARKED FREIGHT PREPAID AND NOTIFY APPLICANT.

(BANK OF CHINA의 지시식으로 발행되고, 운임선지급이 표시되고, 개설의뢰인을 통지처로 기재된 무고장본선적재 선적선하증권 전통)

* CFR, CIF : Seller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FREIGHT PREPAID" (운임선지급)

* FOB : Seller가 운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FREIGHT COLLECT" (운임후불)

2) SIGNED COMMERCIAL INVOICES IN 3 ORIGINALS STATING THE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ERS.(제조사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된 서명된 상업송장 원본 3장)

* UCP 600에서 서명되지 않은 상업송장도 제시될 수 있다.(제18조)

* in 3 Copies, in 3 Folds, in triplicate : 원본 1부, 사본 2부 제시 가능

3) CERTIFICATE OF ORIGIN IN 1 ORIGINAL PLUS 1 COPY.(원산지증명서 원본 1부와 사본 1부)

4) FULL SET OF INSURANCE POLICY FOR 110% OF THE INVOICE VALUE.

(송장금액의 110%를 담보하는 보험증권)

* CIF나 CIP에서는 Seller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보험증권이 요구되며, 부보금액은 송장금액의 110%이며, 부보약관은 ICC(C)이다.

* Insurance Policy(보험증권)을 요구한 경우 보험증권을 제시해야 하며, Insurance Certificate(보험가입증서)나 Insurance Declaration(보험선언서)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Insurance

Certificate(보험가입증서)나 Insurance Declaration(보험선언서)를 요구한 경우 Insurance Policy(보험증권)을 제시할 수 있다.

ii) 선적일 : 선적기일내에 선적해야 한다.

iii) 서류제시기한 : 신용장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선적일 다음날로부터 21일 이내** 그리고 **신용장의 유효기일내에**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용장의 유효기일 및 장소가 수출국인 경우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은행(매입은행, 지급은행, 인수은행 등)에 제시하면 된다.)

iv) Partial Shipment(분할선적) : 신용장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된다.

☞ 신용장에서 분할선적 허용 여부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분할선적 가능

v) Transhipment(환적)

☐ **환적 (복합운송 제19조)**

-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구간인 선적전의 구간, 하역후의 구간에서 옮겨 싣는 것은 환적 아님
- 신용장에서 환적 허용시 : 환적 가능
- 신용장에서 '환적' 문구 없을 때 :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 전체의 운송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해 커버되는** 경우에는 환적이 가능, 그 외에는 환적 금지
- 신용장에서 '환적'금지시 : 환적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 전체의 해상운송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에 의해 커버되면서 관련 화물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LASH Barge에 의해 선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적이 가능
- * 항공운송 및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전체의 운송구간이 하나의 동일한 운송서류에 의해 커버되는 경우에는 환적 가능

vi) 신용장양도와 대금양도

- 대금의 양도는 신용장대금을 받는 권리만 양도받는 것이다.
-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요구되는 서류를 모두 제시하여 신용장대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경우에 대금의 양수인이 신용장대금을 대신 받는 것이다.
- 신용장서류의 제시는 수익자가 해야 한다.
-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명시되지 않아도, 대금양도는 가능하다.
- 대금의 양도가 이루어져도 수익자는 변동이 없다.

구 분	신용장 양도	대금의 양도
양도의 형태	신용장 자체를 양도	대금을 받을 권리만 양도
'Transferable' 기재 여부	L/C에 'Transferable' 기재될 것	L/C에 'Transferable' 기재될 필요 없음

vii) **과부족허용(M/L Clause(more or less clause))**

1) 금액이나 수량(중량 등) 앞에 about, 또는 approximately가 있는 경우 : ±10%의 과부족 허용

- 금액 앞에 about, 또는 approximately가 있는 경우 금액만 ±10%의 과부족 허용
- 수량(중량 등) 앞에 about, 또는 approximately가 있는 경우 수량(중량 등)만 ±10%의 과부족 허용
- 금액 및 수량(중량 등) 앞에 모두 about, 또는 approximately가 있는 경우 금액 및 수량(중량 등)에 대해 ±10%의 과부족 허용

사례 1) 신용장상 : ① 금액 \$100, ② 수량 about 100 PCs

→ 선적서류상 : ① 금액 \$100, ② 수량 90~110 PCs

따라서 90 PCs(\$90), 100 PCs(\$100), **110 PCs(\$100)** * **110 PCs(\$110) (X)**

사례 2) 신용장상 : ① about \$100, ② about 100 PCs

→ 선적서류상 : ① 금액 \$90~110, ② 90~110 PCs

따라서 90 PCs(\$90), 100 PCs(\$100), 110 PCs(\$110) * PCS (pieces, 개수)

2) 금액, 수량(중량 등) 앞에 about, 또는 approximately이 없는 경우

- 중량, 길이에 대해서만 $\pm 5\%$ 의 과부족 허용(이 경우에도 청구금액은 신용장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금액, 수량은 과부족 허용 안됨.

사례 1) ① \$100, ② 100 pcs → ① \$100, ② 100 PCs

사례 2) ① \$100, ② 100 M/T → ① \$100, ② 95~105 M/T

→ 95 M/T(\$95), 100 M/T(\$100), 105 M/T(\$100)

viii) 지정은행(nominated bank)

-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을 말한다. 지정은행의 구체적인 역할은 신용장에서 정해진다.(지정은행의 지급, 매입 등은 지정은행의 권한일 뿐이며, 지정은행에게 지급, 매입 등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지정은행의 표시방법 및 역할 : 'available with ABC Bank by ~' 'by ~' 이하에 기재되는 것이 지정은행의 역할이다.

예시 1) 'available with ABC Bank by negotiation' : ABC Bank가 지정은행이며, 지정은행의 역할은 매입(negotiation)이다. 이 신용장의 경우 ABC Bank에서만 매입이 가능하며, 이를 **"제한매입신용장"**이라고 한다.

예시 2) 'available with any bank by negotiation' : '모든 은행(any bank)'이 지정은행이 될 수 있으며, 지정은행의 역할은 매입(negotiation)이다. 이 신용장의 경우 모든 은행에서 매입이 가능하며, 이를 **"자유매입신용장"**이라고 한다.

예시 3) 'available with ABC Bank by payment' : ABC Bank가 지정은행이며, 지정은행의 역할은 지급이며, 이를 **"지급신용장"**이라고 한다.

예시 4) 'available with ABC Bank by deferred payment' : ABC Bank가 지정은행이며, 지정은행의 역할은 연지급이며, 이를 **"연지급신용장"**이라고 한다.

예시 5) 'available with ABC Bank by acceptance' : ABC Bank가 지정은행이며, 지정은행의 역할은 인수(환어음인수)이며, 이를 **"인수신용장"**이라고 한다.

ix) 확인은행

-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통상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이 된다.) 그러나 확인은행이 확인할 의무는 없으나, 확인요청을 받고 확인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 사실을 개설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 확인은행이 확인을 한 경우 확인은행은 신용장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

- 개설은행의 확인요청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하다.

④ 기타

- "취소가능(irrevocable)" 여부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취소불가("취소가능"이라고 명시된 경우만 취소가능)
- 신용장의 조건변경(amendment) : 개설은행(확인은행) 및 수익자의 동의가 있을 것